

- [illegible]

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없음. 본 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112
- 8항은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제12조 2항*

- 제12조 2항의 "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의미는 지원부서와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가 적절할 듯함. *14항을 보면*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은 편의증진법의 내용과 중복됨.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과 중복

제19조 1항의 "한국수화는 위치를 가지며"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정이라 보여짐. *한국수화어는 한국수화어*

- 제21조 전체적으로 계약위반 또는 민법으로 규율 가능하고 굳이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함. *강제 조항*

- 제23조 1호의 "문화"의 정의가 적절한 것인지,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 필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 중, '문화'를 정의한 법률이 없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다음의 규정들이 있음. 이에 덧붙여, 필요하다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더할 수도 있을 것임. 비교 검토 필요.

제2조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 2003.5.27>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강제 조항

14항을 보면

14항을 보면
14항을 보면
14항을 보면

- 제39조 2호의 "의료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듯 (심리치료사 등 관련 분야 확인)

- 제14절 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존 법률로 규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며, 특히 제42조의 내용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범위가 확장되어 문제라 여겨짐.

■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인권위는 소속이 없고(대통령 직속 아님), 남녀차별개선위는 종전에는 여성부장관 소속이었다가 인권위로 업무 이관.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에 언급함.

- 제49조의 업무 내용에 "시정명령"이 빠져 있음. 시정명령 필요.

- 제51조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규정 필요.

- 제51조 5항, 제62조 2항은 규정에 있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꼭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리라 보여짐. 장애인의 문제와 요구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의 51%는 장애인 당사자로 요구하는 것이 추세인 상황에서, 장애인이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주장할 수 있으나, 굳이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꼭 장애인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제86조, 법원의 관할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함.

■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 제94조 1항 '단체'는 어떤 의미인지 정의 규정 필요.

- 제94조 2항의 배상금 범위 등 검토 필요.

③ 대법원 판례
1. 2011

- 제96조 현행 법 체계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이 많고 악용소지도 많아, '소송대리 및 단체 소송' 조항 삭제.

■ 제6장 벌칙

- 제98조 1항의 "시정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2항에 비추어 "시정권고"라고 한다면 시정권고의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문제).

② 이항은 spring
* 알바니아 인종차별
↓ 시정권고 - moral obligation
→ spring → spring